

1. 개정이유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여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 제2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약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대체조제) ① (생략)	제17조(대체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약사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대체조제한 내용을 <u>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u>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u>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